

	현장실습운영규정	규정번호	3-4-19
		제정일자	2016.05.01.
		개정일자	2019.03.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대외협력처 (현장실습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9조 및 학칙 제3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실습“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 과정을 말한다.
- ②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 ③ “산학협력”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
- ④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⑤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⑥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⑦ “대학”이란 현장실습 수행에 관련된 대학 내 조직 및 학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규정은 학과 특성 상 자격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 제외 학과의 현장실습에 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②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하며 국외 현장실습은 「해외연수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③ NCS현장실습은 NCS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별 인력양성유형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단위별 수행준거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④ 산업체 맞춤형 현장실습은 대학과 협의된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⑤ 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

영할 수 없다.

- ⑥ 현장실습은 제5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 한다.
- ⑦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소 15주 600시간 이상 실시 한다.
- ⑧ 계절제 현장실습은 하계계절학기 또는 동계계절학기 중 최소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 ⑩ 현장실습은 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학과별 현장실습에 대한 사항은 학과장 책임하에 지도교수가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한다.
- ④ 근로가 아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 학교, 학생의 동의하에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한다.
- ⑥ 대학에서는 원활한 현장실습 수행을 위해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실습 제외 기준 및 조치사항 등) ① 현장실습의 취지, 목적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장실습에 포함하지 않는다.

- 1.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 나.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2.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4.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 해당 실습기관이 8시간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제5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 다. 현장실습 중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습을 충족하지 않은 채, 학교로 출석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5. 현장실습의 취지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활동 등
- 6. 기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조항을 위배하는 형태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실습 형태 등

② 대학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이 제1항의 현장실습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교육적 필요 및 운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단시간·단기간 또는 체험 형태의 실험·실습교과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실습기관 및 협약) ① 실습기관은 대학과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관 등을 직접 발굴,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대학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실습지원비 및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④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
3.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⑤ 현장실습은 대학과 실습기관간의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의하여 운영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장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를 하며 세부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학생) ① 현장실습의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3년제는 2학기 이상, 2년제는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 및 계절제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은 후 현장실습 과정을 신청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2.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3.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학생
4.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학생 등

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등의 누설 금지 등
- ⑥ 현장실습은 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현장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 측에 통보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대학 측에 통보하고 대학과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최소 현장실습 이수 기간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타 실습기관에서 학생이 현장실습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무단 결석 등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2. 현장실습운영계획에 따른 교육 및 실습 수행,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제13조(출결관리) ①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결관리를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휴일
2. 법정공휴일
3. 참정권 행사일
4. 실습기관의 휴무일
5. 실습기관과 학생의 사전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

제14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① 대학에서는 학생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제출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실습에 대한 성적평가는 현장실습기관 평가와 지도교수 평가로 구분하되 반영비율은 학과 현장실습시행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학점 인정) 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인정, 부여하지 않는다.

②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 시, 현장실습 수행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현장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부여한다.

③ 현장실습 취득학점에 대한 사항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부여한다.

제16조(학생 보호) ① 실습기관과 대학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대학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

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학의 보험 가입을 갈음한다.

③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17조(현장실습 증명 발급)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① 현장실습 개설 년도, 학기 및 과정 정보
- ② 실습기관명, 현장실습 기간, 내용 등
- ③ 학생 정보 및 이수 학점 수 등

제18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현장실습 관련서류는 학과에서 3년간 보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현장실습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